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11. 24 선고 2022가단500 판결 [부당이득금 등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0. 27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5,634,82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3. 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피고는 2021. 3. 2.경 원고에게 엔진, 배기장치 등에 하자가 있는

1.2톤 중고 냉장왕바디 화물차(2015년식, 주행거리 52만km)를 3.5톤 냉장왕바디 화물차로 속여 통상의 가격(동급: 약 14,000,000원)보다 높은 42,500,000원에 판매하였고, 원고는 차량 인수 후 6개월간 엔진, 배기장치 수리비로 5,634,82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를 상대로 사기(기망)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35,634,820원(= 과다 차량금액 30,000,000원 + 고장수리비 5,634,820원)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① 피고는 인터넷으로 차량판매를 광고하면서 ‘3.5톤 골드 왕바디’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자동차매매계약서(갑 제1호증) 및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자동차등록증(갑 제3호증)에는 모두 ‘한중 1.2톤 냉장왕바디’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, 원고는 차량의 제원 및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매수를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매수차량이 정식으로는 ‘1.2톤’으로 분류됨을 알고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이 작성한 중고차량매매가격표(갑 제5호증)에 1.2톤 왕바디(2016년식)는 14,000,000원으로, 3.5톤 왕바디(2016년)는 40,000,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지만, 중고차량은 차량의 상태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가격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, ③ 이 사건 화물차가 중고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 사실만으로는 위 화물차가 중고 화물차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기준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현저한 결함이 있었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, ④ 수사 경찰 역시 피고에게 사기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 제출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규현